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02호 2015. 9. 30. (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5-125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고시 2
- 거창군 고시 제2015-126호 도로명주소 고시 3
- 거창군 고시 제2015-12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5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5-823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완
료 공고 6
- 거창군 공고 제2015-832호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7
- 거창군 공고 제2015-835호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11
- 거창군 공고 제2015-836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2
- 거창군 공고 제2015-838호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
고 29
- 거창군 공고 제2015-841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4

회 람									
--------	--	--	--	--	--	--	--	--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9월 23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목적 : 농지조성(과수원 조성)

2. 사업내역

(단위:천원)

위 치	사업시행 면적(m ²)		개간용도	사업비 (자부담)	사업 예정 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응양면 산포리 산216-1번지	104,758	3,265	농지조성 (과수원 조성)	1,903	2015.09.23 ~ 2016.09.22	거창군 응양면 석정길 **	이*환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055-940-3544)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30.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2길 26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4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2길 26	2009-04-01	2015-09-30	관청의 비용을 위한 땅이었다고 하는 옛지명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05-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시장2길 9	2009-04-01	2015-09-30	시장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나가는 두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86-8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33-12	2009-12-28	2015-09-30	고학의 새로생긴 마을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83-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75-17	2009-04-01	2015-09-30	영승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1567-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63-9	2012-05-22	2015-09-30	승강기산업공장이 위치하는 길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30-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2길 45	2009-04-01	2015-09-30	행정구역명 마상리가 반영된 두번째 도로	

○ 도로명주소폐지

일련 번호	폐지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폐지사유	비 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8길 32-13	2009-04-01	2015-09-30	건물철거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8길 32-15	2009-04-01	2015-09-30	건물철거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8길 32-17	2009-04-01	2015-09-30	건물철거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8길 32-19	2009-04-01	2015-09-30	건물철거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	2009-04-01	2015-09-30	건물철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거 창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 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m)		
계	1지구					
중유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산3번지 일원	붕괴 위험지역	D	1,250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거창군청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군 안전총괄과(복구지원담당)와 협의하여야 함.

4.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5. 9. 30.

5.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055-940-3651~3)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16호(2015.02.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5. 09. 24.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명칭	위 치	사업규모(m ²)				사업기간	최 초 결정일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교통 시설:여객 자동차 터미널	서흥여객 자동차터미널 이전 신축사업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0-1 일원	13,872	3,941	540.58	693.38	2015.2.26 ~2015.12.3 1	경고 제1985-43호 (1985.03.16)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08
- 성 명 : 서흥여객자동차(주) (대표 김현권)

3.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2. 폐지이유

-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급과 별도로 우리군에서는 조손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 정비 사업으로 권고한 사항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제1항 및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유사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손수당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과 유사한 수당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4. 입법예고 기간 : 2015. 9. 23. ~ 2015. 10. 12.(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055-940-3153**, fax 940-3089 또는 전자우편 **misogirl@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 **☎(055)940-315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조례 제2001호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거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거창몰' 위탁운영 근거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거창푸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푸드종합센터 기능 중 거창몰 운영 항목 추가와 직매장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
- 나.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안 제29조)
- 다.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우편번호 50147] 에게 서면이나 메일(shinck0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마케팅 담당 **☎(055)940-82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9.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가. 인터넷 쇼핑몰 ‘거창몰’ 내용 정의와 위탁운영 근거 마련
- 나.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다.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
- 라.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거창푸드종합센터 기능 중 거창몰 운영 항목 추가와 직매장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
 - 거창몰 : 거창푸드 홍보·판매 인터넷 쇼핑몰
 - 거창푸드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 지역에 설치·운영
- 나.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안 제29조)
 -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
- 다.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9조의2)
 -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
 -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0조, 제4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80,000천원(2016년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5. 9. 24. ~ 2015. 10. 14.
 - 예고결과 :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본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창몰 : 거창푸드 홍보·판매 인터넷 쇼핑몰

③ 거창푸드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원사업)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
2.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3.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4.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다만,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u></p> <p>1. ~ 4. (생략)</p> <p>제28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p> <p>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전시·판매장 : 거창푸드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p> <p>2. 집하·선별·저장 : 거창푸드 농산물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 ----- ----- ----- <u>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28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p> <p>① ----- ----- ----- -----</p> <p>1. ----- -----</p> <p>2. ----- -----</p> <p>3. <u>거창몰 : 거창푸드 홍보·판매 인터넷 쇼핑몰</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거창푸드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u></p>

관 계 법 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753호, 2014.6.11., 타법개정]

제20조(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어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수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및 어항·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34호, 2015.2.3., 일부개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 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6.23.] [법률 제13361호, 2015.6.22., 제정]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

나. 관련 조문

- 제29조의2제1호 :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
- 제29조의2제2호 :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 제29조의2제3호 :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 제29조의2제4호 :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거창푸드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발전
- 거창푸드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발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총 비용(a - b)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세출	도비	-	-	-	-	-
	군비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소계(a)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세입	0					
	지방세	-	-	-	-	-
	소계(b)	-	-	-	-	-

3. 관련 의견 : 거창푸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영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거창군수

1. 조 례 명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조 ~ 제4조)
- 운영위원회 설치와 임무(안 제5조~제8조)
-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용(안 제9조 ~ 제16조)
 - 관리·운영,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 준수사항
- 운영위탁(안 제1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5. 9. 24. ~ 2015. 10. 14.

5.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055-940-8153, 팩스 940-8119 ,이메일 marine8022@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식품 가공담당 **【☎(055)940-815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가공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라 함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원예작물, 특용작물, 식량작물 등을 말한다.
5. “제품”이라 함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거창군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거창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운영위원회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식품가공담당으로 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과 해지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7.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회의·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운영과 사용

제9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서 가공센터의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업인등이 거창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자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설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센터의 적정한 가공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센터의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사용료)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가공물량, 공공요금,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4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6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비로 변상한다.
3. 시설의 사용 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위탁내용,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2. 제정이유

문화재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 유적을 보존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부터 제2조)

- “향토문화유적”이란 국가나,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조물 등 (안 제2조)

나. 지방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향토문화유적 1개소당 보수비 지원한도 : 최대1천5백만원 이내
- 보조율 : 군비 70퍼센트 이내
- 보조금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다. 지원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보수지원 선정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4에 따른 3명 이내의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를 받고,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수 대상 건조물이 군사 및 지역문화유산 관련 책자 수록 여부
- 건립시기, 관리상태, 보수의 긴급성, 산출 적정성 등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유적은 제외하되, 방치시 훼손 우려되고 자연재난 등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함

라. 기록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입법 예고기간 : 2015. 09. 25. ~ 2015. 10. 15.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670-807] 에게 서면이나 메일(kjh841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055)940-34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유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이라 한다)”이란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나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후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조물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적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수비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유적 1개소당 보수비 지원한도 : 최대 1천5백만원 이내
2. 보조율 : 군비 70퍼센트 이내
3.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문화유적을 선정할 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른 3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郡史) 및 군내 지역문화유산 관련 책자 수록 여부
다만, 미 수록 유적의 경우 건립시기, 내력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한다.
2. 문화유적의 건립시기, 보수대상(주요건물, 부속시설 등)

3. 보수의 긴급성, 관리상태,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②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문화유적과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자문결과 2명 이상이 지원부적합으로 판단한 대상지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방치할 경우 추가 훼손이 우려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자문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존관리) ① 문화유적의 소유자는 해당 문화유적을 성실히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작성·보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 사업을 시행한 문화유적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과 기록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2. 개정이유

- 부서명 변경 및 업무분장 이관 등에 따른 미정비된 업무를 현실화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관련법령 개정
 - 사무관리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누락된 부서 업무반영
 - 체육청소년사업소
- 별표 개정
 -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
 - 단위업무 신설, 수정, 삭제 반영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imf1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9. .
제 출 자	행정과장

<p>1. 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명 변경 및 사무이관 등에 따른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현행화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p>2. 주요내용</p> <p>가. 관련법령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p>나. 누락된 부서 업무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청소년사업소 <p>다. 별표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 ○ 단위업무 신설, 수정, 삭제 반영
<p>3. 참고사항</p> <p>가. 관계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 <li style="padding-left: 20px;">「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p>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p> <p>다. 그 밖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예고기간 : 2015. 9. . ~ 2015.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16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로 한다.

제6조 제2호 중 “상이할”을 “다를”로, “통할하는”을 “총괄하는”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결재자는”을 “결재권자 또는 결재자는”으로, “전결권자”를 “결재권자”로 한다.

별표 1부터 5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u>사무관리 규정</u>」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① -----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 제10조-----</p>
<p>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u>상이할</u>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u>통할하는</u>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p> <p>② -----</p> <p>----- <u>다를</u> -----</p> <p>----- <u>총괄하는</u> -----</p>
<p>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별표에서 정한 단위사무별 기안자 또는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p> <p>② <u>결재자</u>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u>전결권자</u>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8조(결재절차 등) ① -----</p> <p>-----</p> <p>② <u>결재권자 또는 결재자</u>는 -----</p> <p>-----, <u>결재권자</u>는 -----</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관 련 규 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